제 1456 호
1989. 11.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유 천 수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2523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 3
제2524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5
제2525호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 ····· 16
제2526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 16
제2527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 ····· 17

◉ 규 칙

제2311호 서울특별시상하수국관사운영규칙중개정규칙 ····· 17
제2312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18

〈이면계속〉

곰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2313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3
제2314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직지정에관한규칙 23
제2315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5
제2316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5

◉ 예 규
제 517 호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개정규정 41

◉ 공 고
제 923 호 관인교부공고 50
제 924 호 관인교부공고 52
제 925 호 관인폐기공고 52
제 926 호 관인재교부공고 52
제 932 호 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계획공람공고 53
제 934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53

◉ 구 공 고
제 7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 53
제 109 호 도시계획사업(소방서)시행인가 54

◉ 사업소공고
제 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54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1. 16

서 울 특 별 시 장 고 건 ㊞

◉서울특별시조례제2523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을림괴준비란란을 문화관광국란으로하여 산업경제국란 뒤에 두고, 동란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1. 전통사찰의 등록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구 청 장
2. 전통사찰주지의 취임신고의 수리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구 청 장
3. 전통사찰 재산의 처분허가 및 취소 가. 사찰경내지의 건조물 또는 경내지 사용 폐지 나. 동산 또는 경재지에 있는 사찰소유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구 청 장

〔별표〕의 문화관광국란에 제13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의 수리 및 등록취소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에 관한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16조	구 청 장
14. 공연자 등록 및 변경	○공연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구 청 장
15. 공연자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공연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구 청 장
16. 공연자 폐업등 신고	○공연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구 청 장
17. 공연자 등록의 취소	○공연법 제6조의2	구 청 장
18. 공연 신고	○공연법 제14조	구 청 장

〔별표〕의 내무국란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재무국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불용물품 결정(차량, 수도사업 특별회계소관 물품 제외)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	사 업 소 장

〔별표〕의 재무국란 다음에 시민생활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업경제국란의제65호 내지 제67호 및 환경녹지국란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청 장
2. 사업자에 대한 명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 청 장
3. 상품권 발행등록 및 명령	○상품권법 제1조의3	구 청 장
4. 쓰레기 종말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준공신고	○오물청소법 제9조·제2항	구 청 장
5. 액상폐기물 정화조 설치신고	○오물청소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구 청 장
6. 액상폐기물 정화조 검사필증 교부	○오물청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구 청 장

〔별표〕의 시민생활국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 볼링장업, 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정구장업, 골프연습장업, 롤라스케이트장업, 미용체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영업의 신고 나. 영업허가, 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과의 사전협의 다. 양도, 양수, 법인합병, 휴업 및 폐업의 신고의 수리 라. 시정명령 마. 등록의 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바. 청문 사. 이용료 또는 관람료의 신고의 수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	구 청 장

아. 보고, 검사등 자. 신고사항 보고 및 통보 차. 과태료 부과, 징수		

〔별표〕의 보건사회국란중 제3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1호, 제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이·미용사의 업무정지처분	○공중위생법 제23조제2항	구 청 장
15.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법 제30조,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1조	구 청 장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및 개설허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허가		
다. 휴·폐업 신고의 수리		
라. 의료기관 감독(보고, 업무검사등, 시정명령등, 개설허가의 취소등)		

〔별표〕의 보건사회국란의 제7호 내지 제13호, 제16호 내지 제27호 및 제40호의 수임기관란중 "보건소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보건사회국란중 제32호 내지 제34호, 제38호 및 제4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5호 내지 제37호를 각각 제32호 내지 제34호로, 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제35호 및 제36호, 제42호 내지 제45호를 각각 제37호 내지 제40호로 한다.

〔별표〕의 보건사회국란에 제41호 내지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7조	구 청 장
42.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구 청 장
가. 판매업 등록 및 허가		
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다 보고 및 검사		
라. 개수 명령		
마. 관리자의 변경명령		
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43.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승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8조	구 청 장
44.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규칙 제14조	구 청 장

45.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 감독	○의료법 제17조 ○적출물등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	구 청 장
46.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휴업·폐업등의 신고수리, 보고의 징구와 검사등, 개설등록의 취소, 과태료 부과, 징수	○의료기사업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3조의7, 제13조의8 및 제17조의3	구 청 장
47. 근로자 1000명미만 사업장의 노동업무(2개구이상에 걸치는 사업장 제외)중 다음의 사항		구 청 장
가.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및 해산신고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제31조	
나. 규약의 변경, 보완명령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제21조	
다.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노동조합법 제26조	
라. 자료조사	○노동조합법 제30조	
마. 해산사유의 존재결정	○노동조합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바. 단체협약신고수리 및 변경, 취소명령	○노동조합법 제34조	
사. 노동쟁의에 관한 폭력행위등 중지명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아. 노동쟁의 발생신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자. 직장폐쇄 신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차. 중재요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48. 유료직업소개소 허가 및 허가취소(다만, 허가취소시는 서울시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함)	○직업안정법 제10조 및 제19조	구 청 장
49. 사회복지용 물품 매매 또는 교환 허가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구 청 장
50.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	○의료보험법 제55조제3항	구 청 장
51. 조합에 대한 감독 중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권한	○의료보험법 제72조	구 청 장

[별표]의 보건사회국란 다음에 가정복지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1조	구 청 장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및 인가취소, 사업정지 처분	○아동복지법 제26조	구 청 장
3. 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 및 취소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	구 청 장
4. 사설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이 지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청 장
5. 허례허식행위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상례의 승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제7항제22호	구 청 장

[별표]의 산업경제국란중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9. 수시검사 (계량기, 계량업소)	○계량법 제30조	구 청 장

[별표]의 산업경제국란에 제72호 내지 제9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연쇄화사업자 지도 육성 가. 연쇄화사업자지정 및 취소 (변경사항승인, 지점의 설치승인 및 취소 포함) 나. 사업양도의 승인 다. 명령 라. 과태료 부과 징수	○도소매진흥법 제25조, 제27조 및 2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구 청 장
73. 부정경쟁행위 조치(시정권고, 의견청취, 고발 및 시정여부 확인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구 청 장
74. 질량 표시상품 검사	○계량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구 청 장
75. 계량기 정기검사 (눈새김탱크로리, 10톤이상 대형저울 제외)	○계량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	구 청 장
76. 눈새김탱크로리, 대형저울(10톤이상) 정기검사	○계량법 제30조	공업시험소장

77. 계량기 제작업 허가	○계량법 제13조 및 제46조의3	공소 업 시 험장
78.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신고의 수리	○계량법 제11조의2 ○동법시행령 제43조	공소 업 시 험장
79. 수입계량기 신고 및 검정지시서 발급	○계량법 제18조 및 제24조	공소 업 시 험장
80. 제2종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공사업 양도, 양수 및 합병인가 나. 공사업 상속신고 다. 공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지시 및 시공정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구 청 장
81. 에너지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제2항	구 청 장
82. 도시가스공급 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구 청 장
83. 액화석유가스사업(용기충전을 제외한 충전, 집단공급, 가스용품 제조)의 허가, 변경허가, 승계·휴지·폐지 및 사용재개의 신고, 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허가의 취소,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보고·검사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5조	구 청 장
84. 고압가스제조 (냉동제조),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구 청 장
85.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구 청 장
86. 도시가스시설(공동주택,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한함)검사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수리, 개선,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과 가스사용시설의 개선명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및 제28조	구 청 장
87. 동물 약사 감시원 임명	○약사법 제70조 ○동물약품등취급규칙 제28조	구 청 장

88. 미검사품의 폐기, 압수, 수거 또는 조치명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7조	구	청	장
89. 축산물 작업장, 착육장 경영자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식육판매업소등에 대한 검사, 수거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6조	구	청	장
90. 사료판매업 신고	○사료관리법 제10조	구	청	장
91.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수의사법 제32조			
92. 일반제분업 허가 및 허가의 취소등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2	구	청	장

〔별표〕의 도시계획국란의 제8호 본문중 "도로중"을 삭제하고, 동호 가목중 "폭30m이상의 도로 제외"를 "주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제외"로 하며, 동호 나목중 "폭3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 제외"를 "주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 제외"로 하고, 제10호 본문중 "마목 내지 파목"을 "라목 내지 파목"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하수도"를 삭제한다.

〔별표〕의 도시계획국란에 제12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석채취 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	구	청	장
13.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제8호 가목 내지 파목에 게기한 시설과 어린이공원에 한하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구	청	장
14. 도시계획 지구지정계획 입안(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구	청	장
15. 도시계획 지역, 지구의 지적승인 및 고시	○도시계획법 제13조	구	청	장
16. 유휴지에 관한 다음사항 가. 유휴지 결정 예정통지 나. 소유자등의 의견접수 다. 유휴지결정통지 및 공고 라. 사후관리(유휴지개발이용촉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0, 제21조의11, 제21조의12 및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구	청	장

계획서 접수처리, 조언 또는 권고, 매수자지정, 매수협의 통지, 매수 협의 불성립에 따른 조치 등)		
17.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행위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구 청 장

〔별표〕의 건설관리국란을 주택국란으로 하여 도시계획국란 다음에 두고, 동란중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란에 제12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행위 허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구 청 장
13.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의 실효고시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4항	구 청 장
14.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및 그고시	○도시재개발법 제13조	구 청 장
15.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구 청 장
1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도시재개발법 제17조	구 청 장
17.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인가에 따른 공람지시 및 의견제택여부의 통지	○도시재개발법 제15조	구 청 장
18.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등의 공시	○도시재개발법 제16조	구 청 장
19.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준공검사, 검사필증의 교부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	구 청 장
20.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의견청취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구 청 장
21. 주택개량재개발지구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비용부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청취 및 부담금 결정	○도시개발법 제58조	구 청 장

〔별표〕의 주택국란 다음에 도로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승인(단, 도로, 구거에 한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7항제28호	구 청 장
2. 도로의 신설 및 부속물의 설치(20㎡미만 도로에 한하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제외)	○도로법 제24조	구 청 장
3. 도로의 유지관리(아스팔트포장 보수공사와 하강상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	○도로법 제24조	구 청 장
4. 비관리청의 도로 공사허가	○도로법 제34조	구 청 장
5. 도로의 출입과 사용등	○도로법 제48조	구 청 장
〔별표〕의 환경녹지국란에 제41호 내지 제7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소음규제 지역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보전법 제35조	구 청 장
42. 산업폐기물 배출업자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구 청 장
43. 산업폐기물의 처리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구 청 장
44.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조성 계획입안(이적지 제외)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공원법 제4조	구 청 장 및 사 업 소 장
45.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지적승인 및 고시(구청장 입안사항에 한함)	○도시계획법 제13조	구 청 장
46.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실시 계획인가(시장 및 공원 관리소장이 실시하는 사업은 제외)	○도시계획법 제25조	구 청 장
47. 비행정청의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 허가	○도시공원법 제6조	구 청 장 및 사 업 소 장
48. 도시공원의 관리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제26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1조	구 청 장 및 사 업 소 장

49. 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구 청 장 및 사 업 소 장
50. 공원 입장료, 점용료, 위탁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	○도시공원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구 청 장 및 사 업 소 장
51.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도시공원법 제18조 및 제20조	구 청 장 및 사 업 소 장
52. 영림기술자의 배치권	○산림법 제10조제2항	구 청 장
53. 산림소유자에 대한 영림 기술자 고용명령	○산림법 제10조제3항	구 청 장
54.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그 취소 및 변경등 필요한 조치권 (10,000㎡이하에 한함)	○산림법 제18조 및 제19조	구 청 장
55. 개발지역 지정을 위한 타인토지등의 출입등	○산림법 제25조	구 청 장
56. 의무조림 비용 예치	○산림법 제41조제2항	구 청 장
57. 조림 명령권	○산림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구 청 장
58. 조림비의 반환조치권	○산림법 제44조	구 청 장
59. 산림용종자, 묘목의 검사 및 판매금지, 소독, 폐기등의 조치권	○산림법 제47조제2항	구 청 장
60. 임산물의 생산자 또는 수요자의 지정권	○산림법 제5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구 청 장
61. 제재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 명령 및 처분등 권한	○산림법 제55조	구 청 장
62. 보안림구역내에서의 행위 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림 또는 복구명령, 대행명령, 비용부담명령	○산림법 제65조	구 청 장
63. 천연보호림등의 보호관리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해제, 고시는 제외)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70조	구 청 장
64. 산림청장의의 관리청 또는 차수인의 국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의 승인, 동의 및 신고 수리	○산림법 제73조제3항	구 청 장
65. 국유림의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과 산물의 양여에 관한 권한	○산림법 제74조	구 청 장

66.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권	○산림법 제75조	구	청	장
67. 성림의 인정권	○산림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65조	구	청	장
68. 권리이전등에 따한 허가권	○산림법 제77조	구	청	장
69.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대부산림 및 대부료등의 반환 조치권	○산림법 제78조	구	청	장
70.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권	○산림법 제79조	구	청	장
71.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 교환 및 매수권	○산림법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구	청	장
72. 국유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 연장허가권	○산림법 제85조	구	청	장
73. 매각계약의 해제권	○산림법 제86조	구	청	장
74. 토석의 매각 및 무상양여등에 관한 권한	○산림법 제87조	구	청	장
75. 분수림의 설정, 권리의 양도, 담보제공의 허가 및 분수림 설정의 취소등	○산림법 제88조 및 제89조	구	청	장
76.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 조치명령	○산림법 제103조	구	청	장
77. 군사상 필요에 의한 국유임야 사용 협의 및 지상 입목, 죽의 처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제2항	구	청	장
78. 수렵 면허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7조	구	청	장

〔별표〕의 교통국란중 제17호 내지 제19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49호를 각각 삭제한다.

17. 자가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의 공동사용 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구	청	장
18.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구	청	장
19. 자가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구	청	장
48.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나.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다. 위험화물 운송의 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구	청	장

라. 사업계획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의 수리		
마. 사업의 양도, 양수, 법인의 합병, 사업 상속신고의 수리		
바. 사업의 개선명령		
사. 등록취소 및 정지		
아. 청문		

〔별표〕의 교통국란에 제59호 내지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법 제52조	구 청 장
60. 창고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창고업법 제3조, 제7조, 제8조,	구 청 장
가. 영업의 허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나. 임치약관인가 및 변경인가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다. 창고의 위치, 구조, 설비 및 보관물품 종류 변경의 허가		
라. 창고구조, 설비품목의 변경명령		
마. 상호, 임원, 정관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바. 사업 정지, 폐업신고의 수리		
사. 양도, 양수 인가, 법인의 합병인가		
아.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자. 보고 명령 및 검사		
차. 사업의 개시 신고의 수리		
61. 자동차운송 및 대여사업의 사업계획중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3조, 제33조의2 및 제55조의3	구 청 장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21조 및 제45조	
62. 화물자동차정류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자동차정류장법 제7조 제8조,	구 청 장
가. 정류장공사의 시행인가, 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나. 정류장공사의 완성검사, 합격 처분, 완성기간의 지정 및 연장		

다. 정류장 유지관리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라. 정류장명칭의 변경신고의 수리 마.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인가등 바. 구조 및 설비의 변경인가등 사. 사업 개선명령 아. 사업의 폐지 및 휴지허가,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위한 동의에 대한 인가		
63.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사용폐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자동차관리 사업소장
64. 보고, 검사등의 권한(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자와 자동차정비업자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제2항, 제3항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 사업소장

〔별표〕의 상하수국란을 하수국란으로 하여 교통국란 다음에 두고, 동란에 제46호 내지 제4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하천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달소의 촉탁, 관리청명칭 첨기)	○하천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구청장
47. 하천 (제방포함) 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 제11조 및 제16조	구청장 및 한강관리 사업소장
48. 준용하천 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구청장
49. 하천, 구거의 용도 폐지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구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524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관리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525호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구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526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하 한다)로 한다.

제18조 제2항중 "구청장"을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하 한다)"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이상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양수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

제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도요금 납부고지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납기 마감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수도요금은 사업소장이 징수한다.

제30조 제1항중 "생하지"를 "발생하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동거인등의"를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등의"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제1항중 "양수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를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로 한다.

제40조 제3항중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권한위임) ①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환불 및 공사비의 분할납부 결정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분담금의 징수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의 설험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연습용 급수사용료의 징수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
8.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수사용량의 계량조정
9.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징수 및 가산금 징수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
11.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급수중지 처분
1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등의 검사
1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해제
1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수리비용 및 양수기대금 징수
1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16.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철거
1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결정, 통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527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제2311호

서울특별시상하수국관사운영관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상하수국관사운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상하수국"을 "상수도사업본부"로 한다.

제1조중 "상하수국"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로 한다.

제2조 제6호중 "상하수국 상수도분야"를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한다.

제7조중 "주관과장(수원지는 수원가전관장, 배수지는 급수과장)"을 "주관부장(수원지사무소는 생산관리부장, 기타사업소는 급수부장)"으로 한다.

제8조중 "시장(주관과장)"을 "본부장(주관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2312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 공무원직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등의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2. 수입원, 지출원등 현금취급원
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4. 제1호내지 제3호에 정한자의 분임자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전서체로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①직인에게는 회계명, 소속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직명은 지출원, 수입출납원, 전도자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①직인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부서에 비치하여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 및 산하사업소의 직인대장을 총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관계 직인대장 : 영업부 과징과장
2. 지출관계 직인대장 : 총무부 경리과장
3. 물품관계 직인대장 : 총무부 경리과장

③직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재각인) 직인의 분실, 마멸등으로 재각인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본ㆍ직인대장 총괄비치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기관의 폐지 및 직인의 마멸등으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직인대장에게 폐기직인을 날인한후 소각하고 직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공고) 직인을 신조, 재각인, 폐기하는 때에는 직인의 사용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직인의 보관)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는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여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수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5서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직인대장 총괄비치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된 세입과 세출 및 현재표 작성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 종결후 직인을 폐기한다.

(별표)

직 인 구 분	인 형 규 격
경리관, 정수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	1.8㎝의 정방형

(별지 제1호서식)

직 인 대 장

○기관명 :

○직인의 종류 :

구 분	신 조	재 교 부	재 교 부	재 교 부	비 기
사 용 년 월 일					
인 영					
사 유					

모조지 120㎏ 모조 16절지

(별지 제2호서식)

직 인 신 조 (개 각) 신 청 서

수 신: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이 유				
서 체 규 격				
직 인 명				
새 긴 일				
새 긴 사 람	주소		성명	
재 료				
사 용 개 시 일	년 월 일			
비 치 처 및 관 수 자				
관 인 외 인 영				

백상지 190㎜ × 268㎜

(별지 제3호서식)

직 인 폐 기 보 고 서

수 신:

년 월 일

보고기관명 ㊞

직 인 명	
사 용 개 시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소 각 일	년 월 일
소 각 담 시 인 영	
비 고	

백상지 190㎜ × 268㎜

(별지 제4호서식)

1. 신조 및 폐기시

인 영 부

직 인 명	
인 영	

2. 재 각 인 시

인 영 부

직 인 명	
구 인 명	
신 인 명	

백상지 190 × 268 ㎜

(별지 제5호서식)

직 인 사 고 보 고 서

수 신 :

년 월 일

보고기관명 ㊞

사 고 인 영	
사 고 발 생 일 시 및 장 소	
사 고 내 용	
사 고 후 처 리 상 황	
기 타	

백상지 190㎜ × 268㎜

◉서울특별시규칙제2313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양수기의 설치는 국·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양수기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중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를 "업소규모"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유대용양수기,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고지서는 서울특별시급수사용료납입고지 및 통합공과금 납입고지의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자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 다만, 월사용량이 기본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수량에 한하여 감면한다.

〔별표2〕의 제6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2314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등 설치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등(이하 "상수도사업본부등"이라 한다)의 회계 및 재산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상수도사업본부등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관직지정) ①상수도사업본부등의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재산총괄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징 수 관 — 본 부 장
분임징수관 — 업무부장
경 리 관 — 본 부 장
재산총괄관 — 본 부 장
분임경리관 — 총무부장
물품관리관 — 총무부장
분임물품관리관 — 각부장
재산관리관 — 행정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부장
　　잡종재산 — 총무부장

채 권 관 리 관 - 본 부 장
분인채권관리관 - 각 부 장
지 출 원 - 경리과장
수입금출납원 - 과장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과 당해 업무 담당자
물 품 출 납 원 - 경리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장
임시전도자금 출납원 - 각과장,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별도지정

2. 사업소

징 수 관 - 소의장(수도사업소에 한한다)
경 리 관 - 소의장
물품관리관 - 소의장
재산관리관 - 소의장
채권관리관 - 소의장
수입금 출납원 - 영업과장(과제 또는 과제제가 없는 기관은 수납담당계장 또는 수납담당자)
지 출 원 - 총무과장(과세 또는 과제제가 없는 기관은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계장(계제가 없는 곳은 경리담당자)
물품출납원 - 총무과장(과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계장으로 하고 수도자재사업소 자재계장은 자재물품출납원 수도자재사업소 정비계장은 차량물품출납원으로 한다)
분임물품출납원 - 수도사업소의 각실과장
전도자금 출납원 :
가. 수도사업소는 각실과장 및 소의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한자
나. 기타사업소는 소의장이 지정

②직제의 변경,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가 겸하게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의장이 이를 분리 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총괄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2. 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3. 보수, 여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4.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지시 및 조달품목의 조달요청

제6조(재산관리 및 처분사무의 위임)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일단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로서 당해연도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의 매각, 대부, 교환에 관한 사항

제7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소의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 성명을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2315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시장(상하수국장)"을 "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하다.

제4조중 "구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2316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중 "별지1-2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서를 구청장"을 "급수공사 신청서(별지제1-2호서식)를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한다.

제3조 제2항중 "구청장(출장소장 포함 "이하같다")"를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전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중 "시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9조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1조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2조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전불량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제3항중 "기조정량"을 "검침량"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업종별 급수사용량은 대원 또는 검침원로 조정한다.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업종이 변경된 급수사용료 조정은 검침일 현재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의 업종의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사용자의 급수업종변경 신고가 있어 분리, 계량을 하였을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1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급수관손료) ①급수관 손료는 급수사용료와 함께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②급수관손료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중 "금융기관" 및 "수납금융기관"을 각각 "수납기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조례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수수료는 타회계에 위탁할 경우에는 당해회계와의 협의에 의하여,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의 범위안에서 양수기 검침은 전당 단가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은 매당단가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소장의 요구에 의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을 이중으로 송달한 경우에도 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수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업무
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따른 단순한 부대업무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탁업무의 수행) 타회계 및 법인은 위탁받은 업무를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동시행규칙, 서울특별시상수도과정사무처리규정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내지 제4항중 "구청장"을 "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타회계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회계와의 협의에 의한다.

제29조 제2항중 "구청장은 전항"을 "사업소장은 제1항"으로 한다.

(별표3)중 "아파트"란을 "주택, 아파트"란으로 하고 "공사장"란 다음에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타	5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용급수전관리인지정서

관리인주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용급수전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19 . . .

○○수도사업소 장 ㊞

관리인 준수사항

1. 공용급수전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을 철저히 납입하여야 한다.

58-28 제1456호 시 보 1989.11.17

(별지 제1-2호서식)

급 수 공 사 신 청 서

접수No. 수전No. 호

설치장소	구 동로 가 번지 호(통 반)				
수요가성명		주민등록번호			
용 도		구조		연건축면적	
특기사항	공사종별				

1. 위와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준공과 공시 급수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수기 및 옥외시설 일체를 이의없이 귀시에 기부채납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구 동 번지 호 통 반TEL:

성명: ㊞

첨부서류 : 1. 건축허가증 사본(신축중인 건물에 한함)

2. 지적도 (청사진) 1매

설치장소 약도

접 수 증

서 류 명	급수공사신청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수년월일	19 년 월 일

○ ○ 수 도 사 업 소

담 당 자 ㊞

884

(별지제 2호 서식)

(앞면)

19 년도
급수량검침원부

정리번호	33			확인	㊞	확인	계 장 ㊞

대장번호		수전번호	15 18		구경	% %	주소 소유자	동 가 번지 호	사용자
					입대				

점검 월	점검 일	사용 1 기종	사용 1 사침수	사용 1 관서	사용 1 사용량	사용 2 회수	사용 2 이상	사용 2 사용량	가구수	주정량	급수 사용료	수당		사계액	납기	확인 점검원	확인 심사

(뒷면)

월일	특 기 사 항	사용자확인
/		
/		
/		
/		
/		
/		
/		
/		
/		
/		
/		
/		
/		

양수기이동사항

설치 년	설치 월일	설치 지침	설치 기물번호	설치 작업자	설치 배수	철거 년	철거 월일	철거 지침	철거 기물번호
	/						/		
	/						/		
	/						/		
	/						/		

급수시설	가구및인구	( )가구( )명	부대시설	수세식변소	유 무
	자 전 수	개		목 탕	유 무
	수요전명	명		정 호 수	유 무
	건물층수	층		가입사성	유 무
	건물구조	조		난방시설	유 무
	지하수사용	사용, 불사용		저수탱크	유 무

약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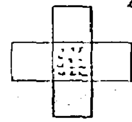

설치호순방향
전 차우집•수전을 기입

양수기설치위치도 (0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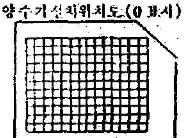

출입문

제1456호 시보 1989.11.17 58-29

58-30 제1456호 시

(제3호 서식)

급수업종변경신청서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		
소 유 자		사 용 자	
수전번호		상호 (기관)	
현 업 종		변경을 요하는업종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청인 ㊞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

보 1989.11.17

(제3-2호 서식)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주 소	동 가 번지 호 (통 반)				
수전번호			소유자		
			사용자		
급수전실태	지전수	욕 탕	수세식변소	기타급수장치내용	
급수사용기록	월	월	월	월	월당
종전업종			변경업종		
적용규정					
변경적용일자					
특기사항					

정리확인	집검카드	수전대장	체납관리카드	계	계장	과장	소장	결재

제4호서식(앞면)

수도요금 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수소	동 가 번지 호	조정량		년도	
성명		㎥	납기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구분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기타	합계
납기내					
납기후					

납부마감일 : 19 . .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19 . . .

○○소도사업소장 인

수입인부인

(사업소통보용)

부

수도3.금	원 부				
수소	동 가 번지 호	조정량		년도	
성명		㎥	납기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구분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기타	합계
납기내					
납기후					

19 . . .

수납기관

○○수도사업소장

수입인부인

(수납기관용)

영 수 증

수도요금	영 수 증				
주소	동 가 번지 호	조정량		년도	
성명		㎥	납기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구분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기타	합계
납기내					
납기후					

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기관

○○수도사업소장

수입인부인

취급자인

※ 수납기관의 수입인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제4호서식(뒷면)

※ 계량기는 이렇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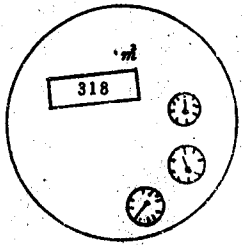

※ 위 계량기 지침수는 318 ㎥ 입니다.

※ 수도사용량계산은 : 금월지침수 - 전월지침수 = 금월사용량

※ 계량기 검침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주십시요.

◎ 납부장소

○ 서울시 소재 시중은행, 축협, 농협, 수협, 우체국

◎ 요금문의

○ 수도사업소 영업과 : (전화번호)

○ 동사무소통합공과금 : (〃)

◎ 가산금

납기가 경과되면 다음의 가산금을 붙여 징수함.

○ 납기일 경과시 5/100

◎ 납부시는 본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납점포용)

수 도 안 내

1. 수도요금은 납부장소에 지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요금은 권제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체납된 수도요금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시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납금납부최고	
건수	금액

※ 상기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람.

(수요가영수증)

제 4 -2 호서식 (앞면)

수도요금	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주 소	동 가 번지 호	조정량		
성 명		㎥ 납기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구 분	추 징 금	과 태 료	기 타	합 계
납기내	원	원	원	원
납기후				

납부마감일 : 19 . . .

위와같이 고지합니다.

19 . . .

○ ○ 수도사업소장 직인

수 입 일 부 인

(사업소통보용)

수도요금	원 부			
주 소	동 가 번지 호	조정량	년도	
성 명		㎥ 납기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구 분	추 징 금	과 태 료	기 타	합 계
납기내	원	원	원	원
납기후				

19 . . .

수납기관

○ ○ 수도사업소장

수 입 일 부 인

(수납기관용)

수도요금	영 수 증			
주 소	동 가 번지 호	조정량	년도	
성 명		㎥ 납기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구 분	추 징 금	과 태 료	기 타	합 계
납기내	원	원	원	원
납기후				

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기관

○ ○ 수도사업소장

수 입 일 부 인

취급자인

※ 수납기관의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제 4 - 2 호서식 (뒷면)

※ 계량기는 이렇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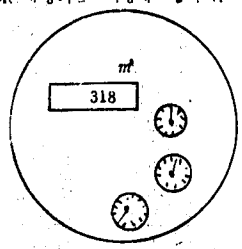

좌기 계량기 지침수는 318㎥ 입니다.

※ 수도사용량계산은 : 금월지침수 − 전월지침수 = 금월 사용량

※ 계량기검침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주십시요.

◎ 납부장소

○ 서울시소재 시중은행, 축협, 농협, 수협, 우체국

◎ 요금문의

○ 수도사업소 영업과 : (전화번호)

○ 동사무소통합공과금 : (전화번호)

◎ 가산금

납기가 경과되면 다음의 가산금을 붙여 징수합니다.

○ 납기일 경과시 $\frac{5}{100}$

◎ 납부시는 본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납점보관용)

수 도 안 내

1. 수도요금은 납부장소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요금은 관계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체납된 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시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보관용)

(제 5-1 호 서식)

19 년	영 수 원 부	책 번 호
수 전 번 호	일련번호	
납 부 자 주 소		성 명
동 가 번지 호		

구 분	년 납기	금 액	합계금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재료매각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합 계			원 정
징수원성명		㊞	

19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금출납원
징 수 원 ㊞

※ 본 영수증으로는 급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

(제 5-2 호 서식)

19 년	영 수 증	책 번 호
수 전 번 호	일련번호	
납 부 자 주 소		성 명
동 가 번지 호		

구 분	년 납기	금 액	합계금
수탁공사비			
시설분담비			
재료매각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합 계			원 정
징수원성명		㊞	

19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금출납원
징 수 원 ㊞

※ 본 영수증으로는 수도요금(급수사용료)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징수원 성명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제 5-3 호 서식)

19 년	영 수 보 고 서	책 번 호
수 전 번 호	일련번호	
납 부 자 주 소		성 명
동 가 번지 호		

구 분	년 납기	금 액	합계금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재료매각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합 계			원 정
징수원성명		㊞	

19
위와 같이 징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금출납원
징 수 원 ㊞

58-34 제1456호 시 보 1989.11.17

〈제6호서식〉 〈앞 면〉 (계속) 一

01 상 업 은 행 01
02 국 민 은 행 02
03 서울신탁은행 03
04 한국외환은행 04
05 조 흥 은 행 05
06 주 택 은 행 06
07 중소기업은행 07
08 제 일 은 행 08
09 한 일 은 행 09
10 농업협동조합 10
11 수산협동조합 11
12 경기서울지점 12
13 대구서울지점 13
14 부산서울지점 14
15 제주서울지점 15
16 강원서울지점 16
17 경남서울지점 17
18 광주서울지점 18
19 전북서울지점 19
20 충북서울지점 20
21 충청서울지점 21

(수도사업본부통보용)

수도요금 독촉장수납원부

년	정리번호		접수번호	

사 용 자 성 명

수 납 입 력 자 료

1		7		13		
19		25		31		
37		43		49		
55		61		67		

사업소	업종	수 전 번 호
수납인		

(주의 * 뚫지마십시오 * 주의)

(수도사업소통보용)

수도요금 독촉장 및 납입필통지서

사업소

년	납부마감일	년 월 일까지	정리번호		접수번호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업 종

년도	납기	급수사용량	급수원손료	가압료	기 타	가산금
					합계액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

※ 사업소장 19 년 월 일

수전번호	
수납인	

□ 납부장소 (원전참조)

※ 관계공무원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은행에 자전납부하여 주십시오.
※ 체납된 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제 6 호서식) ← (계속)

(수납은행용)

수도요금 독 촉 장 원 부

사업소							
	년	정리 번호			검색 번호		

사 용 자 성 명	업 종

년 기	납 기	납 기 별 합 계 액
		원
		원
		원
		원
합 계 액		원

□ 구

은 행
조 합
지 점

수전번호	
수부 납 일인	

※ 납부시에는 본독촉장을 필히 지참하십시오.

(앞 면)

(수요가보관용)

수도요금 독 촉 장 영 수 증

사업소							
	년	납 부 마감일	년 월 일까지	정리 번호		검색 번호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업 종

년도	납기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가 압 료	기 타	가 산 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합 계 액

은행 지점 □ 구

수전번호		
수부 납 일인		취급 자인

※ 금융기관의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치 않으면 정수처분을 단행하게 되며 해제시에는 3,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6 호서식〉

※ 이 독촉장 용지는 수납소 업무에 재차 필요하오니 분실 또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뒷 면〉

◎ 납부장소

① 상 업 은 행	② 국 민 은 행
③ 서울신탁은행	④ 한국외환은행
⑤ 조 흥 은 행	⑥ 주 택 은 행
⑦ 중소기업은행	⑧ 제 일 은 행
⑨ 한 일 은 행	⑩ 농업협동조합
⑪ 수산업협동조합	⑫ 경 기 은 행
⑬ 대 구 은 행	⑭ 부 산 은 행
⑮ 제 주 은 행	⑯ 강 원 은 행
⑰ 경 남 은 행	⑱ 광 주 은 행
⑲ 전 북 은 행	⑳ 충 북 은 행
㉑ 충 청 은 행	

◎ 강제집행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수처분을 단행하게 되며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납부시에 본 독촉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소납점 보관용)

수 도 안 내

1. 수도요금은 은행에 납부하신 후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요금은 관계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체납된 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부과되오니 가옥매매시 전체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독촉장의 체납액중 이의가 있으시면 즉시 구청 수도관리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영수증)

(제 6-2 호 서식) 〈앞 면〉 (계속) →

수도요금	고 지 원 부	사업소
주 소	동 가 번지 호	성 명
수전 번호	업종	정리 번호

년 도	납 기	급수 사용료	급수 관손료	가 압 료	가산금	기 타
				합 계		원

* 19 . . .

수령자 ㊞

(고지기관보관용)

수도요금	독촉장 및 납입필통지서	사업소
주 소	동 가 번지 호	성 명
수전 번호	업종	정리 번호

년 도	납 기	급수 사용료	급수 관손료	가 압 료	가산금	기 타
				합 계		원

납부마감일
19 . . .
납부장소 (별표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
19 . . .
사 업 소 장 ☐

수 납 일 부 인

(사업소통보용)

(제6-2호서식)←(계속)

◎ 납부장소

① 농업협동조합	② 조 흥 은 행
③ 상 업 은 행	④ 제 일 은 행
⑤ 한 일 은 행	⑥ 서 울 은 행
⑦ 중소기업은행	⑧ 국 민 은 행
⑨ 한국외환은행	⑩ 주 택 은 행
⑪ 신 탁 은 행	⑫ 수협중앙회및지소

◎ 강제집행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수처분을 단행하게 되며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납부시는 본 독촉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납점보관용)

(뒷 면)

수 도 안 내

1. 수도요금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요금은 관계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체납된 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명의서 전체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독촉장의 체납액중 이의가 있으시면 즉시 구청 수도관리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영수증)

(제 6-2호 서식)

(앞 면)

수도요금	영 수 증	사업소 ○

주 소	동 가 번지 호	성 명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년 도	납 기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가 압 료	가산금	기 타
				합 계		원

위 금액 영수함.

은행
조합 지점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수부납일인	
취급자	

※ 은행의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계속)→

수도요금	원 부	사업소 ○

주 소	동 가 번지 호	성 명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년 도	납 기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가 압 료	가산금	기 타
				합 계		원

19 . . .

은행
조합 지점

수납일부인	

〈제 6-2 호 서식〉 ←(계속)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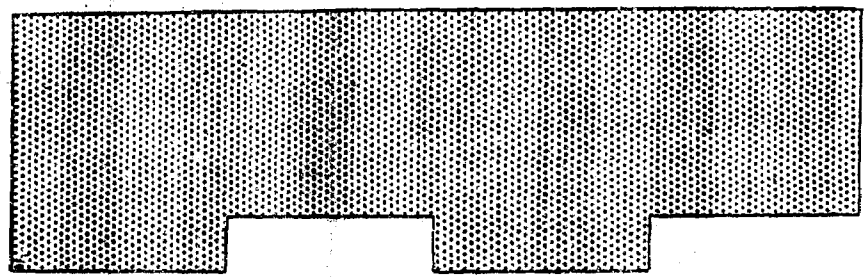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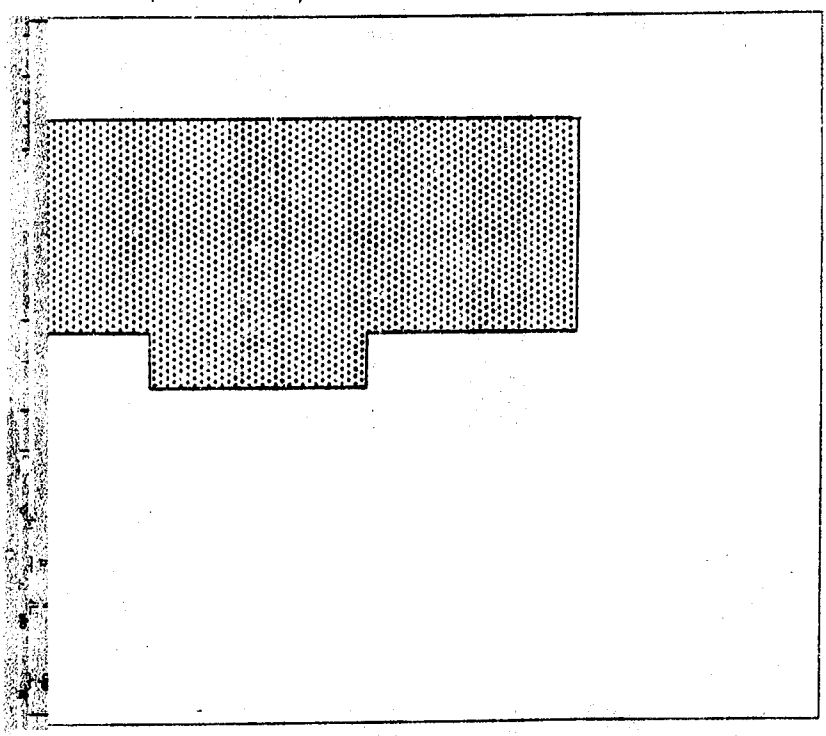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517호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개정규정중 별표를 아래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기 관 기 호 및 수 신 처 기 호

기관명	기관기호	수신처기호	비고
시장실		서실 01	서실 01-02
부시장실		서실 02	
기획관리실		서기 01	서기 01
공보관		서관 01	서관 01-02
감사관		서관 02	
내무국		서국 01	서국 01-16
재무국		〃 02	
시민생활국		〃 03	
보건사회국		〃 04	
가정복지국		〃 05	
산업경제국		〃 06	
문화관광국		〃 07	
도시계획국		〃 08	
주택국		〃 09	
도로국		〃 10	
환경녹지국		〃 11	
교통국		〃 12	
하수국		〃 13	
민방위국		〃 14	
경찰국		〃 15	
소방본부		〃 16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기 호	비 고
기획관리실	기 획 담 당 관	기 획	서과 01	서과 01-84
	심사분석담당관	심 사	〃 02	
	예 산 담 당 관	예 산	〃 03	
	투자관리담당관	투 자	〃 04	
	시정개발담당관	시 정	〃 05	
	법 무 담 당 관	법 무	〃 06	
	통 계 담 당 관	통 계	〃 07	
	전 산 담 당 관	전 산	〃 08	
	기술심사담당관	기 심	〃 09	
감사관	감 사 1 담 당 관	감 일	〃 10	
	감 사 2 담 당 관	감 이	〃 11	
	조 사 담 당 관	조 사	〃 12	
내무국	총 무 과	총 무	〃 13	
	인 사 과	인 사	〃 14	
	행 정 과	행 정	〃 15	
	시 민 과	시 민	〃 16	
	국민운동지원과	국 지	〃 17	
재무국	회 계 과	회 계	〃 18	
	세 정 과	세 정	〃 19	
	세 무 지 도 과	세 무	〃 20	
	관 재 과	관 재	〃 21	
시민생활국	시 민 생 활 과	시 생	〃 22	
	소 비 자 보 호 과	소 비	〃 23	
	생 활 체 육 과	체 육	〃 24	
	청 소 1 과	청 일	〃 25	
	청 소 2 과	청 이	〃 26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기 호	비 고
보건사회국	보건위생과	보 위	서과 27	
	의 약 과	의 약	〃 28	
	사 회 과	사 회	〃 29	
	노 정 과	노 정	〃 30	
	보험연금과	보 험	〃 31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가 정	〃 32	
	부녀복지과	부 녀	〃 33	
	청소년과	청 년	〃 34	
산업경제국	상 공 과	상 공	〃 35	
	연 료 과	연 료	〃 36	
	가 스 과	가 스	〃 37	
	농 축 과	농 축	〃 38	
	양 정 과	양 정	〃 39	
문화관광국	문 화 과	문 화	〃 40	
	문화재과	문 재	〃 41	
	관 광 과	관 광	〃 42	
	국제교류과	국 제	〃 4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 시	〃 44	
	시설계획과	시 설	〃 45	
	도시개발과	도 개	〃 46	
	지 적 과	지 적	〃 47	
주택국	주택기획과	주 기	〃 48	
	건축지도과	건 지	〃 49	
	주택개량과	주 개	〃 50	
	재개발과	재 개	〃 51	

기관명		기관기호	수신처기호	비고
도로국	건설행정과	건 행	서과 52	
	도로계획과	도 계	〃 53	
	도로시설과	도 설	〃 54	
환경녹지국	공원과	공 원	〃 55	
	환경과	환 경	〃 56	
	녹지과	녹 지	〃 57	
	조경과	조 경	〃 58	
교통국	교통기획과	교 기	〃 59	
	운수1과	운 일	〃 60	
	운수2과	운 이	〃 61	
	주차계획담당관	주 차	〃 62	
하수국	하수행정과	하 행	〃 63	
	하수처리과	하 처	〃 64	
	치수과	치 수	〃 65	
민방위국	민방위과	민 방	〃 66	
	운영과	운 영	〃 67	
	비상계획과	비 상	〃 68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 방	〃 69	
	방호과	방 호	〃 70	
	지도과	지 도	〃 71	
경찰국	경무과	경 무	〃 72	
	면허과	면 허	〃 73	
	통신과	통 신	〃 74	
	교통과	교 통	〃 75	
	경비과	경 비	〃 76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기 호	비 고
경찰국	작 전 과	작 전	서과 77	
	보 안 과	보 안	〃 78	
	수 사 과	수 사	〃 79	
	형 사 과	형 사	〃 80	
	정 보 과	정 보	〃 81	
	대 공 1 과	대 일	〃 82	
	대 공 2 과	대 이	〃 83	
	외 사 과	외 사	〃 84	
본부	종합건설본부		서본부 01	서본부 01-03
	상수도사업본부		〃 02	
	지하철건설본부		〃 03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사 01	서사 01-43
	전 자 계 산 소		〃 02	
	공 무 원 교 육 원		〃 03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 04	
	시 립 운 동 장		〃 05	
	보건환경연구원		〃 06	
	동 부 병 원		〃 07	
	아 동 병 원		〃 08	
	서 대 문 병 원		〃 09	
	정 신 병 원		〃 10	
	근 로 자 회 관		〃 11	
	긴급구명안내센타		〃 12	

기관명		기관기호	수신처기호	비고
소속기관	부녀보호소		서사 13	
	아동상담소		〃 14	
	청소년사업관		〃 15	
	남부근로청소년회관		〃 16	
	동부근로청소년회관		〃 17	
	구로부녀복지관		〃 18	
	마포부녀복지관		〃 19	
	노원부녀복지관		〃 20	
	농촌지도소		〃 21	
	공업시험소		〃 22	
	세종문화회관		〃 23	
	건설자재시험소		〃 24	
	동부건설사업소		〃 25	
	서부건설사업소		〃 26	
	남부건설사업소		〃 27	
	북부건설사업소		〃 28	
	건설자재사업소		〃 29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 30	
	위생처리장		〃 31	
	녹지사업소		〃 32	
	남산공원관리사무소		〃 33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34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 35	
	자동차관리사업소		〃 36	
	차량정비사업소		〃 37	
	교통관리사업소		〃 38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기 호	비 고
소속기관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서사 39	
	민방공경보통제소		〃 40	
	소 방 학 교		〃 41	
	항 공 대		〃 42	
	청와대소방대		〃 43	
경찰국·직할대	제 101 경 비 단		서대 01	서대 01-16
	제22특별경호대		〃 02	
	국 회 경 비 대		〃 03	
	정부종합청사경비대		〃 04	
	김포국제공항경찰대		〃 05	
	제 1 기 동 대		〃 06	
	제 2 기 동 대		〃 07	
	제 3 기 동 대		〃 08	
	제 4 기 동 대		〃 09	
	제105전투경찰대		〃 10	
	제201전투경찰대		〃 11	
	제602전투경찰대		〃 12	
	제603전투경찰대		〃 13	
	제605전투경찰대		〃 14	
	제606전투경찰대		〃 15	
	제607전투경찰대		〃 16	

58-48 제1456호 시 보 1989.11.17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기 호	비 고
구	중 로		서구 01	서구 01-22
	중		〃 02	
	용 산		〃 03	
	성 동		〃 04	
	동 대 문		〃 05	
	중 랑		〃 06	
	성 북		〃 07	
	도 봉		〃 08	
	노 원		〃 09	
	은 평		〃 10	
	서 대 문		〃 11	
	마 포		〃 12	
	양 천		〃 13	
	강 서		〃 14	
	구 로		〃 15	
	영 등 포		〃 16	
	동 작		〃 17	
	관 악		〃 18	
	서 초		〃 19	
	강 남		〃 20	
	송 파		〃 21	
	강 동		〃 22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기 호	비 고
경	중부		서경 01	서경 01-25
	종로		〃 02	
	남대문		〃 03	
	서대문		〃 04	
	동대문		〃 05	
	용산		〃 06	
	성북		〃 07	
	청량리		〃 08	
	마포		〃 09	
	영등포		〃 10	
	성동		〃 11	
	노량진		〃 12	
참	동부		〃 13	
	서부		〃 14	
	북부		〃 15	
	남부		〃 16	
	대통		〃 17	
	강남		〃 18	
	관악		〃 19	
	강서		〃 20	
서	강동		〃 21	
	종암		〃 22	
	구로		〃 23	
	서초		〃 24	
	선경		〃 25	

기관명		기관기호	수신처기호	비고
소방서	종로		서소 01	서소 01--14
	중부		〃 02	
	성동		〃 03	
	용산		〃 04	
	동대문		〃 05	
	영등포		〃 06	
	성북		〃 07	
	도봉		〃 08	
	서부		〃 09	
	마포		〃 10	
	강남		〃 11	
	남부		〃 12	
	강서		〃 13	
	강동		〃 14	
지방공사	지하철공사		서공 01	서공 01-05
	시설관리공단		〃 02	
	강남병원		〃 0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04	
	도시개발공사		〃 05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923호

관인교부공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외 11개소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 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4. 11.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 1989. 11. 14
2. 승인관인내역 : 따로붙임.

신 조 승 인 직 인 모 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인]	 [서울특별시 수도기술연구소장의인]	 [서울특별시 수도자재사업소장의인]
 (중부수도사업소장인)	 (서부수도사업소장인)	 (동부수도사업소장인)
 (북부수도사업소장인)	 (은평수도사업소장인)	 (강서수도사업소장인)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인)	 (강남수도사업소장인)	 (강동수도사업소장인)

◉서울특별시공고제924호

관인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11.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 1989. 11. 14
2. 승인관인내역 : 아래와 같음.

승 인 인 영

구 분	직 인 인 영
신조승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의인

◉서울특별시공고제925호

관인폐기공고

서울특별시 "지방도시 재개발 심의위원회"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함을 동 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11.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기승인일자 : 1989. 11. 14
2. 폐기관인내역 : 아래와 같음.

폐 기 승 인 인 영

구 분	관 인
폐기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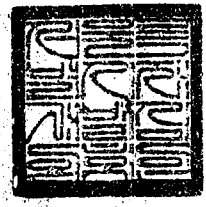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재개발심의회 인

◉서울특별시공고제926호

관인재교부공고

동대문 경찰서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11.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 1989. 11. 14
2. 관인재교부내역 : 따로붙임

승 인 인 영

구 분	직 인 도 형
구인영 (폐기인영)	(동대문경찰서장 인)
신인영 (재교부인영)	(동대문 경찰서장 인)

◉서울특별시공고제932호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 1989. 11. 17-1989. 12. 1

1989. 11.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궁동168번지외59필지	49,762	
도시계획사업	도 로	도시계획시설(도크)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드크)과 동일함		별첨도면표시 참조
구역내도시계획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 부 럭 -	1,260	

◉서울특별시공고제934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전기공사업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제2종전기공사업을 실효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11.

서 울 특 별 시 장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실효처분유효일
900	전우전력(주)	김 봉 곤	영등포구영등포2가 77-1	89. 12. 7

구 공 고

◉동대문구공고제77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완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4호('89. 1. 21.)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되어 사업시행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산8-3에 대하여 모든 사업이 시행허가대로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8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1. 15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전농동 산8 -3일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명칭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확충
라. 사업시행규모
○체육관 1동 신축(지하1, 지상2층)
-연면적 : 3,243.84㎡
○도서관 1동 신축(지하1, 지상3층)
-연면적 : 6,205.06㎡
○공대실험기 창고신축(지상 1층)
-연면적 : 405㎡
마. 사업시행자 주소 : 동대문구 전농동 산8-3
성명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정 희 채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1989. 1-1989. 11. 6

◉구로구고시제109호

도시계획사업(소방서)시행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286호 (89. 6. 19)로 변경 결정 및 구로구 고시 제76호 (89. 8. 2)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소방서)신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소방서)시행인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1989. 11. 13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고척동 63의12외 4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소방서) : 구로소방서
다. 사업시행규모 : -사업시행면적 : 3,306
-건축면적 : 752.74
-건축연면적 : 2,840.46
라. 사업시행자 : 영등포 소방서장
마. 사업시행기간
1) 착공일 -- 89. 12. 1
2) 준공예정일 - 9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주 소	이해관계	비 고
구로구고척	66-19	도 로	107	서울특별시		
〃	63-12	도 로	529	서울특별시		
〃	277-14	하 천	391	국세청장		
〃	63-13	잡 종 지	292	해덕강업(주)		
〃	66-18	잡 종 지	1,987	해덕강업(주)		

사 업 소 공 고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공고 제1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 폐기 신고하고 동 규칙 제1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11. 15
목동지구개발사업소장

1. 사용개시일자 : 1989. 1. 1 및 1984. 1
2. 폐 기 일 자 : 1989. 11. 15.
3. 폐 기 직 인 :
   1)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경리관
   2)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3)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지출원
   4)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물품관리관
   5)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물품출납원
   6)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스 수입금출납원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특별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 목동 지구 개발 사업소
직 명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경리관
사 용 기 간	1989년 1월 1일부터 1989년 11월 15일까지

인 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특별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 목동 지구 개발 사업소
직 명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분임경리관
사 용 기 간	1989년 1월 1일부터 1989년 11월 15일까지

인 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특별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 목동 지구 개발 사업소
직 명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지출원
사 용 기 간	1989년 1월 1일 부터 1989년 11월 15일 까지

인 영

사 령

◎ 1989년 11월 15일자 5급공무원전보(승인예정자) 령 제432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및 직 위	직 급
송 현 섭	내 무 국	북부건설사업소장	지방토목기좌
시 승 일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
강 창 구	〃	도시계획과 종합계획과장	〃
양 영 규	〃	도로과 도로시설계장	〃
윤 종 문	〃	감사담당관실 감사3계장	〃
전 희 상	〃	기술심사담당관실 건축심사계장	지방건축가좌
이 강 윤	〃	강서구 공원녹지과장	지방임업기좌
박 수 환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비공사과	지방기계기좌

4급공무원전보 령 제433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위	직 급
전 완 규	기획관리실 기술심사담당관	양 천 구	건 설 국 장	지방시설기정
양 갑	주택국 건축지도과장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장	시 설 기 정
진 철 훈	〃 주택개량과장 직무대리	도 봉 구	도시정비국장	지방시설기정
전 희 상	〃 재개발과장 〃	종합건설본부	공 사 2 부 장	〃
김 병 천	도로국 도로계획과장 〃	기 획 관 리 실	기술심사담당관	〃
김 석 기	〃 도로시설과장 〃	상 하 수 국	영등포수원지소장	〃
김 남 훈	시민생활국 청소2과장 〃	성 북 구	건 설 국 장	〃
김 실	환경녹지국 조경과장 〃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시 설 과 장	지방임업기정
유 낙 훈	하수국 치수과장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목공사과장	지방시설기정
김 재 석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중 구	건 설 국 장	〃
박 명 화	〃 건축부장 직무대리	도 시 계 획 국	재 개 발 과 장	시 설 기 정
황 한 균	〃 설비부장	상 하 수 국	불당수원지사무소장	지방공업기정
이 희 봉	환경녹지국 녹지사업소장	종합건설본부	공 사 5 부 장	지방임업기정
서 무 전	지하철건설본부 건설부장	종합건설본부		지방시설기정
최 창 식	〃 공무부장	영 등 포 구	건 설 국 장	〃
조 세 호	〃 기전부장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공업기정
이 상 훈	〃 설계감리실장 직무대리	상 하 수 국	수원기전과장	공 업 기 정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위	직 급
손 병 국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장	종합건설본부	공 사 3 부 장	지방공업기정
임 동 국	〃 급수부장	중 랑 구	건 설 국 장	지방시설기정
김 진 배	〃 시설공사부장직무대리	상 하 수 국	급 수 과 장	시 설 기 정
유 봉 환	〃 뚝도수원지사무소장	동 대 문 구	건 설 국 장	지방시설기정
박 우 명	〃 보광동수원지사무소장	상 하 수 국	구의수원지사무소장	지방공업기정
김 상 순	〃 암사수원지사무소장	상 하 수 국	보광동수원지사무소장	지방공업기정
이 운 택	중구 건설국장	관 악 구	건 설 국 장	지방시설기정
이 창 성	중랑구 건설국장	은 평 구	건 설 국 장	지방시설기정
전 기 택	은평구 건설국장	종합건설본부	공 사 4 부 장	〃
장 상 우	서대문구 건설국장	상 하 수 국	암사수원지사무소장	〃
송 선 국	관악구 건설국장	서 대 문 구	건 설 국 장	〃
김 동 환	도봉구 도시정비국장	내 무 국		〃
강 정 생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파견	녹지사업소장		지방임업기정
시 승 일	종합건설본부 조경부장 직무대리	내 무 국		지방토목기좌
이 강 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시설과장 직무대리	〃		지방임업기좌
박 수 환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수원지 사무소장 직무대리	〃		지방기계기좌
윤 종 문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수원지 사무소장 직무대리	〃		지방토목기좌
송 현 섭	상수도사업본부 풀당수원지 사무소장 직무대리	〃		〃
전 희 상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 직무대리	〃		지방건축기좌
양 영 규	성북구 건설국장 직무대리	〃		지방토목기좌
강 창 구	양천구 건설국장 직무대리	〃		〃

◎1989년 11월 15일자 **기능직공무원면직** 령 제43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경 희	원세 외허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 교통과	지방사무보조(타자) 서보(기능10등급)
권 영 순	〃	경찰국 면허과	지방사무보조(조무) 서보(기능10등급)

공무국외여행명령

'89. 11. 1.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장	지방서기관	이병규	미국, 캐나다	89. 11. 22 -12. 5 (14일간)	시비	체육부주관 선진국체육시설 실태조사참가
민방위국장	별정직2급 상당	김진천	독일,스위스,영국,이태리 프랑스	89. 12. 3 -12. 17 (15일간)	시비	내무부주관 외국 민방위제도 비교시찰
세종문화회관	이사관 별정직5급 행정서기 전문진마호 합창단장	서정희 고대림 윤재근 김영욱 최홍기 외52명 (명단별첨)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89. 12. 4 -12. 23 (20일간)	세종문화회관 공연비	서울시립합창단 유럽순회공연
교통국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사관 부이사관 교수 교수	박종우 이호조 임강원 원재무	일본	89. 11. 23 -11. 27 (5일간)	시비	시장 동경도 공식 방문에 따른 교통시찰단 수행

서울특별시장